

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제도안내



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란?

- ✓ 연구개발·인력개발 지출비용이 발생하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 (법인·개인사업자)이 신청하는 경우,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

- (연구개발) 과학적·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



사전심사 신청혜택

- ✓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
- ✓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 제공 (예시 : R&D활동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노트 작성·관리방법)

심사대상

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관련 지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·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

➡ 일부기간·일부연구과제, 지출예정 비용, R&D활동 여부(기술검토)만도 각각 신청 가능

법인세 신고 전까지 신청가능

➡ (법인세 신고 후)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정청구 전 사전심사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홈택스*(www.hometax.go.kr), 우편, 방문접수(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)

* 접속경로 : 홈택스 로그인 > 증명·등록·신청 > 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·신고 >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

제출서류

- ①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,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, ③ 연구개발 보고서,
- ④ 기타 입증서류(연구노트, 급여대장, 재료비 집행내역 등)

사전심사 신청 필요성
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·인력개발 활동 여부, 공제대상 비용 범위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

-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,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, 사전심사를 통해 공제가 가능 여부 확인 필요

- R&D세액공제 부당공제 추징 사례

- A법인은 연구와 무관한 업무(홍보, 영업, A/S 등)를 겸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징
- B법인은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B 법인이 자체부담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나, 출연금*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

*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제외되는 출연금에 대해 수령명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

※ QR코드를 인식하시면 국세청 누리집*(www.nts.go.kr)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페이지로 연결되어 **사전심사 주요내용, 신청방법 등을 확인**하실 수 있습니다.

*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신고안내 > 법인신고안내 > 법인세 >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



R&D 사전심사

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

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현장 설명회 안내

- ▶ 안녕하세요?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▶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」와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▶ 이에, 기업에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사전심사」제도와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현장 방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장 방문 설명회 개요

일 시 2026. 6. 12(금) 14:00~16:00

장 소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 (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)

대 상 연구소 실무담당자, 세무담당자 등

내 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및 연구개발 활동 여부 판단,
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 안내, 1:1 현장 컨설팅

참가신청 아래의 Url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설명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한 : '26.6.10(수) 23시 까지

[Url 주소] <https://naver.me/GAr8Zo74>



설명회 신청

2026. 5.

지방국세청장(관인생략)

사전심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
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

로 연락하시면